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·제빙 의무화 관련「자연재해대책법」개정(2015.11.30.) 및 「지붕 제설·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」제정(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145호, 2015.12.31.)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설·제빙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공업화박판강구조(PEB)와 아치판넬 용어 신설
- “제설·제빙”에 ‘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’ 추가

나. 제설·제빙 책임순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제설·제빙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

라. 제설·제빙 시기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3시간 이내 → 4시간 이내
-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이상인 경우, 눈 그친 후 24시간 이내
- 지붕 제설 적설량 기준 마련

마. 제설·제빙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지붕 눈 제설시 적치장소 규정 마련

바. 제설·제빙 작업의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사. 제설·제빙 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아. 제설·제빙 도구 비치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자연재해대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[기획감사실-3349(‘17. 4. 6.)]
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 없음[주민복지과-23639(‘17. 4.19.)]
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‘17. 5. 4. ~ ‘17. 5.24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「지붕 제설·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」가 개정되어 법과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성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」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설·제빙 용어 정의와 책임 순서를 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·제빙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였고
- 안 제5조에서는 제설·제빙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눈이 그치고 주간은 4시간 이내로 하며,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는 눈이 그친 후 24시간 이내로 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지붕 눈 제설시 적치장소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터나 이면도로, 시설물 내 대지 등에 임시 적치하도록 하였고
-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제설·제빙 시 작업의 안전 유의사항과 일몰, 폭풍, 한파 시 작업의 중지사항을 규정하고,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·제빙 시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·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・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